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글로벌대학 지정의 근거 마련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99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8.
3. 회부연월일 : 2024.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방대학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처럼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의 소멸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은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현행법상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임.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 소재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및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글로벌대학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학·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글로벌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u>제도 개선</u> 에 관한 사항 6. <u>지방대학의 특성화</u> 에 관한 사항 7. 8.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제도 개선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u> ----- 6. <u>지역의 산업·사회를 연계하여 교육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학의 육성</u> 에 관한 사항 7.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u>

현행	개정안
	<u>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u> <u>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글로벌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u> <u>4.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u> <u>5.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u> <u>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 8. (생략)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	-----. 1.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기본계획 및 지원전략----- 2.·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의2에 따른 글로벌대학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 8. (현행과 같음) 제17조(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대학지원협약(이하 “대학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지원협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개정안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u> <u>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u> <u>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장이 제출한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지원협약에 따라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⑤ 그 밖에 대학지원협약의 사업범위,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7조의2(글로벌대학의 지정 등)</u> <u>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u>

현행	개정안
	<u>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글로벌대학(이하 “글로벌대학”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대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경우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교육부장관은 글로벌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u> <u>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u> <u>④ 글로벌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 계획 및 <u>특성화</u>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u> ⑥ <u>글로벌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 ----- ----- ---<u>글로벌대학 대학 육성</u>----- -----. ② ~ ④ (현행과 같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¹⁾) 체계 구축 및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 시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방대학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RIS(지역혁신)²⁾을 중심으로 기존의

1)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2) 2020년에 도입하였으며 ①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②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③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지역혁신기관과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
 대활성화 사업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부터 RISE 체계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획임. 이를 통해 시·도 지정 전담기구에 지역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³⁾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는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지원 규모
 를 대학 단위로 하는 프로젝트임. 구체적으로는 지역산업과 사회와 연
 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26년까지 30개교 내외를 지정하여 5년간 교당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⁴⁾

2. 지원전략의 수립(안 제5조의2)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
 기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조의2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교육부장 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u>

신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
 3) RISE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에 첨부.
 4) 2023년 12월 현재 10개 대학이 지정된 상태이며 향후 20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임

현행	개정안
	<u>기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u> <u>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글로벌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u> <u>4.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u> <u>5.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u> <u>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현행	개정안
	<u>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u>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④ <u>교육부장관은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에의 권한 이양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는 고등교육이나 대학에 관한 규정

이 없는 등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대학지원에 관한 업무 경험이 부족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는 지원전략이 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별 기본계획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지원전략에서의 시·도별 기본계획,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안 제17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학지원협약의 체결과 그 체결 절차에 관해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대학지원협약(이하 “대학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u> <u>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u> <u>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②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지원협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지원협약에 따라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⑤ 그 밖에 대학지원협약의 사업범위,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며, 대학지원협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대학지원 협약에 명시된 성과관리 조항 등에 구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대학지원협약의 법적 구속력에 관해 명시한 바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함.

또한, 개정안은 대학지원협약의 사업 범위,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대학지원협약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소 경미한 것이며 제2항과 제3항에서 개략적이거나 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대학지원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문언만으로는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4. 글로벌대학의 지정 등(안 제17조의2)

개정안은 글로벌대학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7조의2(글로벌대학의 지정 등)</u> ① <u>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글로벌대학(이하 “글로벌대학”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대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경우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u>교육부장관은 글로벌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현행	개정안
	<u>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u> <u>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u> <u>④ 글로컬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u> <u>⑥ 글로컬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재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7조5) 및 「지방대 육성법」 제17조이며, 안 제17조의2는 현행법 제17조(특성화 대학)를 삭제하고 글로컬대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현행법 제17조와 안 제17조의2의 내용을 비교하면 기존의 특성화대학과 글로컬대학은 크게 두 가지 사항에서 차이가 있음.

5)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지정 목적의 변화인데, 안 제2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를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로 변경하였음.

두 번째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변경된 것인데, 안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기존의 ‘교육부장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안 제17조의2제5항의 규제특례 적용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해당 규제특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및 대학등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특례일 것으로 예상되나, 법문언 상으로는 대학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에 대한 특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해당 규제특례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88